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1년 1월 1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행정안전부 전 해 철
장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31409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에게 유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유류판매업의 영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도 유가공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고용노동부령 제308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2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설공사도급인”을 “건설공사도급인(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相)된”을 “건설공사도급인은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건설공사도급인은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4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종료 후 1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및 그 밖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교육은 별표 4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받아야 하는 전체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별표 11 제1호 본문 중 “영 별표4 제10호와 제11호”를 “영 별표 4 제8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건설공사도급인의 서류 작성 및 보존에 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명세서를 작성·보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축소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추가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811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